

#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0년 11월 일  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행정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양수기 반환조치시 미사용 선납 사용료에 대한 반환금 기준마련.

## 2. 주요골자

양수기를 반환할 때에는 기허 납부된 사용료중 사용일을 제외한 사용료는 반환한다.(안제9조 제3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관계부처승인 : 필요없음
- 라. 신.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##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3항중 "반환할 때에는 기히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"를 " 반환할 때에는 기히 납부된 사용료중 사용일을 제외한 사용료는 반환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.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관리 및 감독)①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</p> <p>③제2항에 한하여 반환할 때에는 기히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9조(관리 및 감독)①..... ..... .....</p> <p>②..... ..... .....</p> <p>③..... <b>반환할 때에는 기히 납부된 사용료중 사용일을 제외한 사용료는 반환한다.</b></p>